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959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이개호·박지원·박 정  
정준호·정진욱·문금주  
송옥주·서미화·김병주  
김문수·김대식·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건의료) -----<br>-----<br>-----<br>-----<br>-----<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 <u>간호법</u> 」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u>간호서비스</u> |
| <u>3. ~ 8.</u> (생    략)                                                                                        | <u>4. ~ 9.</u>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